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41 발의연월일: 2020. 11. 19.

발 의 자:권명호·임이자·송언석

정희용 · 김형동 · 강민국

정진석 · 윤영석 · 김기현

이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, 자산규모 및 대부채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·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· 감독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등록·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은 시·도지사와 금융위원회 모두 법 위반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·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경고·문책 요구, 임원의 해임 권고·직무정지, 직원의 면직요구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등록·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 내용이 달라

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도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·경고·문책 요구, 임원의 해임 권고·직무정지,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).

법률 제 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"을 "시·도지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금융위원회는"을 "시·도지사등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경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	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	⑥ <u>시·도지사등은</u>
<u>등록된</u>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	
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⑦ <u>금융위원회는</u> 퇴임·퇴직한	⑦ <u>시·도지사등은</u>
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・	
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	
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	
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	
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	
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.	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